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 1. 개정이유

- 「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제2941호, 2020. 12. 28. 공포, 2020. 12. 28.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환급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3.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9.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3. 제1항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제1항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5. 제1항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법무사시험)</p> <p><u>&lt;신 설&gt;</u></p>	<p>제3조(법무사시험)</p> <p><u>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 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u></li> <li><u>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u></li> <li><u>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u></li> <li><u>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u></li> <li><u>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u></li> </ol>

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9.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

<신 설>

① · ② (생 략)

분의 5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5.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